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90
----------	-------

발의연월일 : 2024. 2. 29.

발 의 자 : 김도읍 · 박 진 · 장동혁
황보승희 · 권명호 · 윤한홍
하영제 · 김은희 · 권영세
유경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방지 시설의 효율개선, 비산·배출되는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 또는 민간 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단순 ‘의무 부여’만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어, 의무적으로 감축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운영자 외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

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참여하는 자(“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자원 등을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집중관리 시설의 운영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
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2(집중관리 시설의 운영 자 및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이라 한다)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u> <u>1.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지원</u> <u>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감면</u> <u>3.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주기 완화</u> <u>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대상·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